

1960년대 이러한 개념을 접한 미국 언론사에서도 미디어엑세스권이 편성권·편집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통합방송법에 따르면,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음부즈맨 프로그램을 모두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잘 만든 것입니다. 새로운 권리개념인 미디어엑세스권을 가장 잘 표현한 법제가 방송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상 길게 방송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시민사회단체나 개인의 의견을 공적으로 방송에 실어주는 것입니다. 또, 언론중재위원회의 반론·정정·추후·손배도 일종의 미디어엑세스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역시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장한다고 봐야합니다.

언론사 간의 조정신청이 급증해 저도 걱정됩니다. 중재위원회 측에서 적절한 제도 운용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조사한다면 접수된 사건의 처리가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유사 사건이 계속 접수되는 것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 오 복 (경남신문 사회부장)

- 조정중재제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 위원회 적극적인 조정 필요

경기도 인구는 경남의 약 4배이고 언론사 수는 방송국의 경우 2배가 넘으며 일간지는 경기도 27개사, 경남은 11개사가 있습니다. 주간지는 경기도 372개사, 경남은 111개사가 있습니다. 인터넷언론의 경우 1,310개사 대 200개사로 엄청난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의 청구건수가 경기도의 약 65%라는 것은 첫째, 언론사의 보도행태에 문제가 있고, 둘째, 경남도민들의 의식수준과 실천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제자님의 발제 내용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고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언론사 현업의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청구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정정보도가 51%, 손해배상이 41.6%인 반면 반론보도는 2.8%, 추후보도는 4.6%입니다. 높은 도민 의식에 반해 조정청구에 대한 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정보도청구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이유는 반론보도와 정정보도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론보도를 청구해야 하는 경우에도 정정보도를 신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언론사는 반론보도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론보도를 정정보도인 양 착각해서 이에 인색했지만 이제는 취재 단계에서부터 반론권을 보장하는 교육을 하고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병합 청구하는 데에는 물질적 보상 목적도 있겠지만 피신청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이끌어내는 전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취하율이 45%라는 점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고 실제로 일부 영세 신문사들은 금전배상만 아니면 반론·정정보도는 얼마든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또, 기관·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자신의 무고함이나 결백함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하고자 일단 언론조정중재부터 신청해놓고 보자는 식인 경우도 많습니다.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중에 이런 문제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가 반론보도로 조정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지급이 결정될 경우 지급을 감당하기 힘든 대부분의 영세 언론사들이 중재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손해배상 신청효율이 59.5%로 낮다는 해석을 하셨습니다. 이에 동의를 합니다만,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턱없이 높기도 합니다. 소송과 달리 인지대가 들지 않으므로 금액을 무조건 올려놓고 보자는 식

입니다. 심지어 중재부에서 1/10 수준의 조정액을 제시하더라도 애초 제시액이 너무 크므로 당사자가 수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관련 신청효율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 선거 때마다 언론사의 부당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는 후보자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 사실관계에 상관없이 자신의 유·불리 여부만 따져 신청하는 후보자도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지자체 장이 정책에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해 언론통제의 수단으로 조정중재신청을 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언론사도 문제지만 후보자나 지자체의 장도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무엇보다 중재부의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 영 주 (경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발제자)

- 언론조정중재제도 우리 고유의 언론피해구제제도로 정착

손해배상 직권결정 액수는 200~1,000만원 사이로 영세 언론사에게는 큰 타격입니다. 이미지에도 좋지 않고 금전적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직권결정 중에서 반 이상의 사건에 대해 언론사가 이의를 제기해서 법원으로 가는데 법원에서는 상당히 많은 피해자들이 소를 취하합니다. 법원에서 신청인이 승소하기 쉽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법원에서는 징벌적 배상액 수준에 미치지 않지만 옛날에 비해 손해배상액수가 높아졌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중재위원회의 손해배상 액수는 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신문방송학자로서 언론기본법이 만들어졌을 때 이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지금은 언론조정중재제도가 많이 발전하여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언론피해구제제도로 정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피신청인의 입장에서 고쳐야 할 부분도 있겠